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내용

이 길 주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II. 주요개선방향

주요 개선방향을 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회계처리 방식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직접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수입대체경비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수납 및 집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정했던 예산집행품의 전결 한도를 한도금액만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자율로 결정토록 개선하였다.

둘째, 불필요한 일별이기 차원에서 회계의 엄정성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회계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셋째, 행정의 전산화가 확대됨에 따라 재무회계에 있어서도 전자적 처리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I.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개선 배경

최근 지자체 업무처리 절차가 전자화·투명화·간소화되어 가고 있고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인 지방분권에 따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중에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재무회계처리에 있어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재무회계의 전자적 처리 방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을 대폭 손질하였다.

이는 그동안 재정규모와 조직규모가 서로 다른 자치단체에 대하여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현실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군의 경우 부군수의 전결처리 금액을 5천만원까지 규정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규칙의 범위를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단체를 일반구가 있는 시, 국이 있는 시, 시·군·구로 유형화하여 각각 집행품의 전결 상한 기준만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선하였다.(안 제21조제1항)

3. 재정사항 합의금액 상향 조정

현행 예산집행을 위한 품의시 자치단체 조직과 특성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회계

관련국장 및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 집행사항까지 합의를 받도록 하여 업무추진 지연과 회계과장, 회계국장의 업무량 증가를 초래하여 행정의 비능률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합의대상을 금액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사업내용, 사업성격 등 중요한 경비에 대하여만 의무적으로 합의토록 하고 기타 경비에 대하여는 지자체에서 합의한도를 자율 결정토록 개선하였다. (안 제22조)

〈의무적 합의경비〉

-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 물품제조·구매(1건당 100만원 이상)
- 업무추진비(1건당 50만원 이상)
- 민간위탁경비

4. 불필요한 재무회계처리 절차의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전결 상한기준〉

구 분	부단체장			국 장			과 장
	공사	용역·물품	기타	공사	용역·물품	기타	1 건당
일반구가 있는 시	5억원	3억원	2억원	3억원	2억원	1억원	5천만원
국이 있는 시	4억원	2억원	1억원	2억원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시·군·구	2억원	1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의무합의 대상 및 금액 현황〉

구 분	경리관(자치·재무국장)		분임경리관(회계과장)	
	공사·토지매입	제조, 구매, 용역	공사·토지매입	제조, 구매, 용역
시·도	10억 초과	3억 초과	10억 이하	3억 이하
시·군·구	1억원 초과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

간소화

① 회계서류 편철방식 개선

현재 회계서류는 1개월 단위로 예산과목별,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고 있다. 이는 수기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하던 과거의 방식으로 사후 지출증빙서류를 쉽게 찾기 위해서 그동안 편철을 해왔었다. 그러나 예산과목별로 편철을 하다보니 1개월 전체분의 지출이 끝나야만 정리 및 편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관도중 분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몇개월씩 방치하여 한번에 편철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따라서 지출일자 순으로 바로 편철하여 보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회계업무를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어 지출사항(과목별)을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지출증빙서류철에 전산시스템에서 지출일자 순으로 출력된 색인(지급명령 발행부 등)을 첨부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신속한 확인이 가능토록 하였다.(안 제126조제3항)

② 약식통상지급명령제도 확대

현재 세출예산 지출시 지출원은 통상지급명령 등을 발하여 금고에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은행(금고)이 청사 내에 있는 경우에는 약식통상지급명령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약식통상지급명령제도 : 지출결의서 빈 자리에 지급사항을 기재하고 지출원이 날인하여 금권을 발행하는 방식

약식통상지급명령은 일반지급명령보다 위변조가 어려워 안정성 확보에 용이하고 발행절차가 간소한 이점이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금고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에도 약식통상지급명령이 가능토록 개선하였다.(안 제51조제1항)

③ 지출결의서에 의한 추산방식 개선

현재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매 건별로 소관과장 및 담당자의 추산(확인날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절차로 번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추산제도는 수기로 회계문서 작성할 때에 예산집행 현황을 파악·통제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회계처리에 전산화가 도입되어 집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재에는 사실상 불필요한 절차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관과장의 확인제도를 폐지하여 담당자 확인만 거치도록 하였다.(별지 제45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 관련 제도 개선

① 세입세출외현금반환시 이자지급방법 개선

현행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는 보관금, 보증금 등을 보관하고 보관기관이 경과한 후에는 예탁자에게 반환시 이자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지급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상 채권채무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최장 10년, 최단 3년)과 차이가 있어 실무 적용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을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기간(5년)으로 통일되게 개정하였다. (안 제77조제4항)

또한 현행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시 보 증금, 보관금, 잡종금으로 구분하여 이월 총액만 장부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 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세입조치하 지 않고 관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입세출외현금 이월금을 건별로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이 월토록 하였다.(안 제77조제5항)

6. 전자정부구현에 부응한 재무회계의 전자화

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고지·징수·납부의 전자적 처리근거 마련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외수입업 무의 전산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 으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태 이다.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전자화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납입고지 서 등의 인터넷 및 E-mail을 통한 고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전자납부(전자결재, 전자화폐)규정을 신설하고 시·군·구에서 시·도에 징수보 고서 제출시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안 제37조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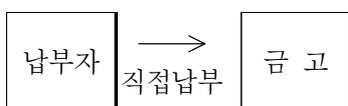
② 과오지출금 반납 및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시 계좌이체 도입

현재 과오지출 반납 및 세입세출외현금 보관시 납부자가 고지서에 의해 지방자치 단체 금고에 직접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원거리 납입자는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 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개인통장을 개설하여 계좌이체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회계사고 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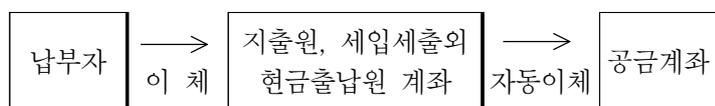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출원이나 세입세 출외현금출납원 명의의 공공예금통장을 개 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체된 반납금 등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 등으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여 회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안 제41조제3항, 안 제76조제5항)

③ 세외수입 OCR납입 고지 근거규정 마련
현재 세외수입업무전산시스템을 구축하 여 전산출력양식(OCR)으로 세외수입을 납

〈현 행〉



〈개 선〉



구분	부시장·부지사		실·국장		과 장
	제조·용역·물품	기타	제조·용역·물품	기타	
현행	3억원~10억원	2억원	3억원	2천만원	1천만원
개선	5억원~10억원	4억원	5억원	2억원	5천만원

입고지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칙적인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세외수입고지에 있어 OCR 고지서로 납입고지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토록 개선하였다.(안 제32조)

* OCR(Optical Character Reader) : 광학문자판독기, 기계로 인쇄된 문자를 광학적 수단에 의해서 판독하는 장치, 보통 세금, 공공요금 청구서(지로용지) 등의 관리에 사용함으로써 모든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처리됨.

7. 기타 개선사항

현재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 시범실시에 따른 시범운영기관에서 시험용으로 복식부기방식의 재무제표 및 재정보고서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안 제30조의1)

또한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실·국장, 과장의 집행품의 전결금액을 상향조정하여 현실화 하였다.(안 제21조제1항)

그리고 현재 10만원 이상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중에서 현금지급가능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비,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50조제3항)

특히 제1관서에 일상경비출납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임시관서에 대하여도 기타관서에 준하여 회계관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3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예산의 집행부분도 포함하여 시달하였으나 '05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을 폐지하고 4개 경비와 예산과목만을 훈령으로 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집행시 혼란이 예상될 수 있어 '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안 제160조)

IV. 맺는 말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처리방식 개선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행정환경은 지금 이시간에도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불필요한 내부절차, 규제 등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생산적이고 탄력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세계속에 경쟁하는 자치단체가 되어야만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고 진정한 국민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